

## 동두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99. 9.

제 출 자 : 동두천시장

제안이유

- 그 동안 중앙기관에서 추진해 오던 소비자보호업무와 95년 12월 29일 소비자보호법 (법률제 5030호)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및 개·폐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동두천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동두천시소비자보호조례를 새로이 제정하여 소비자보호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역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 용어의 정의, 소비자의 역할, 시의 의무등을 규정함

(제1조 내지 제4조)

나. 소비자에 대한 위해방지, 서민생활안정, 유급물가모니터제운영, 공정거래질서확립, 소비자보호교육등의 근거를 규정함(제5조 내지 제8조)

다. 소비자 보호단체의 업무와 소비자 단체의 육성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피해구제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한다.(제9조 내지 제13조)

라. 소비자호보시책 및 전반에 관한 필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제14조 내지 제19조)

동두천시조례 제 호

## 동두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이하 “시”라한다)와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보호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반입,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자재(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소비자의 역할) ①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식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에 앞장서야 한

다.

③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 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의무) 시는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해방지) 시장은 소비자에 대한 위해방지 차원에서 생명과 인체 및 재산사의 안전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있을 경우 소관 주무관청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본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품목에 대한 물가조사 및 동향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물가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물가조사 및 동향관련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급물가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되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소비자보호교육등) ①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등 계몽활동과 교육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경제부 및 경기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교육 및 계몽활동등을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재정경제부 또는 경기도에 등록된 시 관내 소비자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소비자 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제4호 소비자의 교육, 계몽, 캠페인, 제5호 소비자피해 및 불만 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등

②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소비자보호목적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시장은 소비자단체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등은 동두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1조(소비자피해구제 신청·처리·조정) ①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또는 소비자단체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시 또는 소비자 단체는 해당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 환불, 시정, 해약등의 적절할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 사항중 사실진위여부 확인곤란사항, 집단적·

다발적사항,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합의 권고 불응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제조사의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소비자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처리요령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  
가 접수된 것중 당사자간 합의, 철회 또는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  
야 한다.

제14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소비자보호 및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및 물가등을  
자문,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제1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된 자가 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문화공보실장, 사회진흥과장, 세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농  
림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수도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시의회의원, 학계,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근로자단체, 여성단체, 경제인 단체에서 적임자  
를 시장이 위촉한자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간사는 지역경제과 경제담당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 제2호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 제3호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제4호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②위원회는 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상·하수도 요금
2. 폐기물수수료, 쓰레기봉투료, 쓰레기위생매립장 반입료, 분뇨수집징수료, 정화시설 청소수수료
3. 차량건인료 및 보관료,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4. 공공시설(시립도서관,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등)사용료
5. 행정수수료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서비스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등

③제2항의 제2호내지 제6호의 조정대상 요금중 인상후 1년이 경과되고 인상율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억제 목표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가 있는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수 있다.

제19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동두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동두천시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